

## 제 안 설 명 서

【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】

영 주 시

## 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안	
번 호	27

제출년월일 : 1998 . . .

제 출 자 : 영 주 시 장

### 1. 개정이유

고용직공무원의 휴직제도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골자

- 가.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의2, 제9조의3)
- 나.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1년 단축함(안 별표)

### 3. 개정조례(안) : 덧붙임

### 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### 5. 참고자료 : 덧붙임

- 조례 표준안 1부.
- 관계법령(발췌) 1부.

## 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

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휴직기간)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.

제9조3(휴직의 효력) ①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
②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, 복직일 전 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.

[별표]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·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란중 근무상한연령 “58세”를 각각 “57세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**신·구조문 대비표**

**【영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(안)】**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휴직)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	제9조(휴직)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
1.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	1. .... ..... ....
2.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,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한다.	2. .... .....
< 신 설 >	제9조의2(휴직기간)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.
< 신 설 >	제9조의3(휴직의 효력) ①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 ②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자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,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.

현 행		개 정 안			
<b>【별표】</b>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·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표		<b>【별표】</b>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·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표			
구분	1종	경노무	구분	1종	경노무
직명	지도원	사환	.....	.....	.....
근무상한연령	58세	58세	.....	57세	57세
※ 지도원은 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 의 임용등에 관한조례(조례 제31호 1995.1.9)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.		※ .....		.....	.....

## 관 계 법령 (발췌)

### [지방공무원법]

제2조(공무원의 구분) ① ~ ②<생략>

③ “특수경력직공무원”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정무직공무원<생략>

2. 별정직공무원

    가. 비서관, 비서

    나. <삭제>

    다.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3. <생략>

4. 고용직공무원 :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·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·임용절차·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

6709 "관인생략"

## 경상북도

우 702-702 대구·북구·신격동 1443-5 / 전화 (053)950-2212 / 전송 950-2219  
내무국 총무과 과장 김영재 / 인사개정 이준우 / 담당 이강학

문서번호 총무 12100 - 1214

시행일자 1998. 9. 15. (3)

(정유)

수 신 시 장·군 수

참 조 총무·내무과장

### 제 2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통보

- 행정자치부 12100-450('98. 9.17)의 이첨입니다.
- 지방공무원법이 개정('98. 9.19)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을 불임과 같이 통보하니 가급적 '98. 9월중 개정·공포도록 조치하기 바라며
- 이 표준안에 의한 조례개정내용의 공포예정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략하기 바랍니다.

붙 임 :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1부. 끝.

## 경상북도지사

진결 내무국장 일·월·직

##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

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

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휴직기간)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.

제8조의3(휴직의 효력) ①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
②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자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, 복직일 전 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.

별표중 근무상한연령란의 "58세"를 각각 "57세"로 한다.